

다른 법령(사업법 등)에 의한 자격종목 변경

1. 기 술 사 법

기술사법 시행령 제정 '64.05.27. 대통령령 제1819호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 '67.01.04. 대통령령 제3343호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 '72.06.08. 대통령령 제620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기술사농업부문(축산) 기술사농업부문(작물) 기술사농업부문(식물방역) 기술사농업부문(잡사) 기술사농업부문(농화학) 기술사농업부문(농공학)	기술사농업부문(축산) 기술사농업부문(작물) 기술사농업부문(식물방역) 기술사농업부문(잡사) 기술사농업부문(농화학) 기술사농업부문(농공학)	기술사농업부문(축산) 기술사농업부문(작물) 기술사농업부문(식물방역) 기술사농업부문(잡사) 기술사농업부문(농화학) 기술사농업부문(식물가공) 기술사농업부문(농공학)			<삭 제> <삭 제> <삭 제> 섬유기술사(생사) 산업응용기술사(농예화학) 산업응용기술사(식품제조가공) 토목기술사(관개배수및농지조성)
기술사수산부문(어로) 기술사수산부문(증식) 기술사수산부문(수산가공)	기술사수산부문(어로) 기술사수산부문(증식) 기술사수산부문(수산가공)	기술사수산부문(어로) 기술사수산부문(증식) 기술사수산부문(수산가공)			<삭 제> <삭 제> 산업응용기술사(수산제조)
기술사임업부문(임업) 기술사임업부문(임산)	기술사임업부문(임업) 기술사임업부문(임산)	기술사임업부문(임업) 기술사임업부문(임산)			<삭 제> 산업응용기술사(임산가공)
기술사전기부문(발송배전) 기술사전기부문(전기기기) 기술사전기부문(전기응용) 기술사전기부문(고전압및전기재료) 기술사전기부문(전자응용) 기술사전기부문(전기통신)	기술사전기부문(발송배전) 기술사전기부문(전기기기) 기술사전기부문(전기응용) 기술사전기부문(고전압및전기재료) 기술사전기부문(전자응용) 기술사전기부문(전기통신)	기술사전기부문(발송배전) 기술사전기부문(전기기기) 기술사전기부문(전기응용) 기술사전기부문(고전압및전기재료) 기술사전기부문(전자응용) 기술사전기부문(전기통신)			전기기술사(발송배전) 전기기술사(전기기기) 전기기술사(전기응용) 전기기술사(전기재료) 전자기술사(계측제어) 통신기술사(전기통신)
기술사기계부문(기계공작및공작기계) 기술사기계부문(온냉방및냉동기계) 기술사기계부문(원동기) 기술사기계부문(정밀기기) 기술사기계부문(교통차량) 기술사기계부문(유체기계) 기술사기계부문(산업기계)	기술사기계부문(기계공작및공작기계) 기술사기계부문(온냉방및냉동기계) 기술사기계부문(원동기) 기술사기계부문(정밀기기) 기술사기계부문(교통차량) 기술사기계부문(유체기계) 기술사기계부문(산업기계)	기술사기계부문(기계공작및공작기계) 기술사기계부문(온냉방및냉동기계) 기술사기계부문(원동기) 기술사기계부문(정밀기기) 기술사기계부문(교통차량) 기술사기계부문(유체기계) 기술사기계부문(산업기계)			기계기술사(기계공작및공작기계) 기계기술사(냉난방및냉동기계) 기계기술사(열원동기) 기계기술사(정밀기계) 기계기술사(교통차량) 기계기술사(유체기계) 기계기술사(산업기계)
기술사화공부문(화학비료) 기술사화공부문(무기약품) 기술사화공부문(유기화학제품) 기술사화공부문(연료및유탄유) 기술사화공부문(섬유소) 기술사화공부문(프라스틱) 기술사화공부문(전기화학) 기술사화공부문(화학장치및설비) 기술사화공부문(질소)	기술사화공부문(화학비료) 기술사화공부문(무기약품) 기술사화공부문(유기화학제품) 기술사화공부문(연료및유탄유) 기술사화공부문(섬유소) 기술사화공부문(프라스틱) 기술사화공부문(전기화학) 기술사화공부문(화학장치및설비) 기술사화공부문(질소)	기술사화공부문(화학비료) 기술사화공부문(무기약품) 기술사화공부문(유기화학제품) 기술사화공부문(연료및유탄유) 기술사화공부문(섬유소) 기술사화공부문(프라스틱) 기술사화공부문(전기화학) 기술사화공부문(화학장치및설비) 기술사화공부문(요업)			화공기술사(화학비료) 화공기술사(무기약품) 화공기술사(유기화학제품) 화공기술사(연료및유탄유) 화공기술사(섬유소) 화공기술사(고분자제품) 화공기술사(전기화학) 화공기술사(화학장치및설비) 산업응용기술사(요업)
기술사섬유부문(방직)	기술사섬유부문(방직)	기술사섬유부문(방직)			섬유기술사(방직)

기술사법 시행령 제정 '64.05.27. 대통령령 제1819호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 '67.01.04. 대통령령 제3343호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 '72.06.08. 대통령령 제620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기술사섬유부문(제직및편조) 기술사섬유부문(염색정리가공)	기술사섬유부문(제직및편조) 기술사섬유부문(염색정리가공)	기술사섬유부문(제포) 기술사섬유부문(염색정리가공) 기술사섬유부문(방사)			섬유기술사(제포) 섬유기술사(염색가공) 섬유기술사(방사)
기술사금속부문(철야금) 기술사금속부문(비철야금) 기술사금속부문(금속재료및가공) 기술사금속부문(표면처리) 기술사금속부문(금속주조)	기술사금속부문(철야금) 기술사금속부문(비철야금) 기술사금속부문(금속재료및가공) 기술사금속부문(표면처리) 기술사금속부문(금속주조)	기술사금속부문(철야금) 기술사금속부문(비철야금) 기술사금속부문(금속재료및가공) 기술사금속부문(표면처리) 기술사금속부문(금속주조)			금속기술사(철야금) 금속기술사(비철야금) 금속기술사(금속재료) 금속기술사(표면처리) 금속기술사(금속가공)
기술사광업부문(채광) 기술사광업부문(선광)	기술사광업부문(채광) 기술사광업부문(선광)	기술사광업부문(채광) 기술사광업부문(선광)			광업기술사(채광) 광업기술사(선광)
기술사조선부문(조선) 기술사조선부문(선박기관)	기술사조선부문(조선) 기술사조선부문(선박기관)	기술사조선부문(조선) 기술사조선부문(선박기관)			조선기술사(조선설계) 조선기술사(기관)
기술사항공부문(기체) 기술사항공부문(동력장치) 기술사항공부문(장비)	기술사항공부문(기체) 기술사항공부문(동력장치) 기술사항공부문(장비)	기술사항공부문(기체) 기술사항공부문(동력장치) 기술사항공부문(장비)			항공기술사(기체) 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술사(항공장비)
기술사건설부문(구조물) 기술사건설부문(철도) 기술사건설부문(하천및제방) 기술사건설부문(상수도및수질관리) 기술사건설부문(하수도및폐수처리) 기술사건설부문(토질및기초) 기술사건설부문(항만및해안) 기술사건설부문(도로및공항) 기술사건설부문(수력) 기술사건설부문(도시및지방계획)	기술사건설부문(구조물) 기술사건설부문(철도) 기술사건설부문(하천및제방) 기술사건설부문(상수도및수질관리) 기술사건설부문(하수도및폐수처리) 기술사건설부문(토질및기초) 기술사건설부문(항만및해안) 기술사건설부문(도로및공항) 기술사건설부문(수력) 기술사건설부문(도시및지방계획)	기술사건설부문(구조물) 기술사건설부문(철도) 기술사건설부문(하천및제방) 기술사건설부문(상수도및수질관리) 기술사건설부문(하수도및폐수처리) 기술사건설부문(토질및기초) 기술사건설부문(항만및해안) 기술사건설부문(도로및공항) 기술사건설부문(수력) 기술사건설부문(도시및지방계획)			토목기술사(구조) 토목기술사(철도) 토목기술사(수자원) 토목기술사(상하수도) 토목기술사(상하수도) 토목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기술사(항만및해안) 토목기술사(도로및공항) 토목기술사(에너지토목) 국토개발기술사(지역및도시계획)
기술사응용이학부문(생물) 기술사응용이학부문(물리및화학) 기술사응용이학부문(지구물리) 기술사응용이학부문(지질) 기술사응용이학부문(생산관리) 기술사응용이학부문(수학)	기술사응용이학부문(생물) 기술사응용이학부문(물리및화학) 기술사응용이학부문(지구물리) 기술사응용이학부문(지질) 기술사응용이학부문(생산관리) 기술사응용이학부문(수학)	기술사응용이학부문(생물) 기술사응용이학부문(물리및화학) 기술사응용이학부문(지구물리) 기술사응용이학부문(지질) 기술사응용이학부문(생산관리) 기술사응용이학부문(수학) 기술사응용이학부문(정보처리)			<삭 제> <삭 제> 산업응용기술사(지구물리) 산업응용기술사(응용지질) 생산관리기술사(공장관리) 정보처리기술사(수학응용) 정보처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

2. 건설업법

건설업법 시행령 제정 '58.03.11. 법률 제477호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 '58.09.24. 법률 제498호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 '67.03.30. 법률 제194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건설기술자 (토목)	건설기술자 갑류 (토목) 건설기술자 을류 (토목) 건설기술자 병류 (토목)	건설기술자 갑류 (토목) 건설기술자 을류 (토목) 건설기술자 병류 (토목)			토목기술사(시공) 토목기사1급 토목기사2급
건설기술자 (건축)	건설기술자 갑류 (건축) 건설기술자 을류 (건축) 건설기술자 병류 (건축)	건설기술자 갑류 (건축) 건설기술자 을류 (건축) 건설기술자 병류 (건축)			건축기술사(건축시공) 건축시공기사1급 건축시공기사2급
건설기술자 (기계)	건설기술자 갑류 (기계) 건설기술자 을류 (기계) 건설기술자 병류 (기계)	건설기술자 갑류 (기계) 건설기술자 을류 (기계) 건설기술자 병류 (기계)			기계기술사(건설기계) 건설기계기사1급 건설기계기사2급

3.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제정 '58.07.04. 대통령령 제1382호	소방법 시행령 개정 '66.04.14. 대통령령 제1955호	소방법 시행령 개정 '72.02.08. 대통령령 제250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위험물취급주임	갑종위험물취급주임 을종위험물취급주임	갑종위험물취급주임 을종위험물취급주임 갑종소방설비사 을종소방설비사			위험물취급기능사1급 위험물취급기능사2급 소방설비기사1급 소방설비기사2급

4. 지적측량사 규정

지적측량사규정 제정 '60.12.31. 국무원령 제176호	지적측량사규정 개정 '60.12.31. 대통령령 제176호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 '72.06.08. 대통령령 제620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지적측량사(세부측량과) 지적측량사(기초측량과) 지적측량사(확정측량과)	지적측량사 (확정측량과,기초측량과및세부측량과) 지적측량사(확정측량과 및 기초측량과) 지적측량사(확정측량과 및 세부측량과) 지적측량사(기초측량과 및 세부측량과) 지적측량사(확정측량과) 지적측량사(기초측량과) 지적측량사(세부측량과)				지적기사1급 ※지적측량사자격증3(과)소지자 지적기사2급 지적측량사자격증2(과)소지자 지적기사2급 지적측량사자격증2(과)소지자 지적기사2급 지적측량사자격증2(과)소지자 지적기사2급 지적기사2급 지적기사2급

5.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제정 '61.12.31. 법률 제835호	총포화약류단속법 제정 '62.04.10. 각령 제64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화약류취급책임자	갑종화약류취급책임자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을종화약류취급책임자 (2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화약류관리기사1급 화약류관리기사2급
화약류작업책임자	갑종화약류작업책임자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을종화약류작업책임자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병종화약류작업책임자 (3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제조기사1급 화약류제조기사2급 화약류제조기능사2급

6.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정밀화촉진사업업무지침 제정 '72.03.22. 상공부지침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67.01.04. 대통령령 제334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특급정밀가공사 1급정밀가공사 2급정밀가공사 1급정밀측정사 2급정밀측정사	<삭 제> 1급정밀기능사(정밀가공사1급) 1급정밀기능사(정밀가공사2급)				정밀가공기능사1급 정밀가공기능사2급 정밀측정기능사1급 정밀측정기능사2급

7. 전 기 사 업 법

전기사업법 제정 '61.12.31. 법률 제953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73.10.11. 대통령령 제6900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82.04.29. 대통령령 제10802호
전기주임기술자1급 전기주임기술자2급 전기주임기술자3급	전기주임기술자1급 전기주임기술자2급 전기주임기술자3급 댐수로주임기술자1급 댐수로주임기술자2급 보일러터어빈주임기술자1급 보일러터어빈주임기술자2급			전기기사1급 전기기사1급 (전기기사2급) 전기기사2급 (전기설비기능사1급)	토목기사1급 토목기사2급 일반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2급

8.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제정 '61.12.31. 법률 제95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전기기술자갑류 전기기술자을류 전기기술자병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응시자격해당자로서 실기시험 합격자) 전기기술자병류					전기공사기사1급 (전기공사기사2급) 전기공사기사2급 (전기공사기능사1급) 전기공사기사2급 전기공사기능사2급

9. 원동기단속법

원동기단속법 제정 '61.12.30. 법률 제894호	원동기단속법 개정 '72.12.26. 법률 제2383호	원동기단속법 시행령 개정 '73.10.22. 대통령령 제690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원동기취급면허 원동기검사원	원동기취급면허 원동기검사원 원동기시공기술자	제1종원동기취급면허 제2종원동기취급면허 원동기검사원 원동기시공기술자			원동기취급기능사1급 원동기취급기능사2급 원동기검사기사1급 원동기시공기능사1급

10. 광 산 보 안 법

광산보안법 제정 '63.03.05. 법률 제1292호	광산보안법 시행령 개정 '67.04.17. 대통령령 제301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광산보안관리직원	상급광산보안관리직원 보통광산보안관리직원				광산보안기사1급 광산보안기능사2급

11. 열 관 리 법

열관리법 시행령 제정 '74.05.31. 대통령령 제716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1급열관리사 2급열관리사					열관리기사1급 열관리기능사2급

12. 측 량 법

측 량 법 제정 '61.12.31. 법률 제938호	측 량 법 개정 '71.01.29. 법률 제229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측량사 측량사보	1급측량사 2급측량사				측지기사1급 측지기사2급

13. 중 기 관 리 법

중기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76.04.13. 건설부령 제170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82.04.29. 대통령령 제10802호
1종불도저 1종로우더 1종스크레이퍼 2종기중기 2종굴삭기 2종덤프트럭 2종콘크리트믹서 2종모우터그레이더 3종로올러 3종지게차 3종아스팔트휘니셔 4종아스팔트믹싱프랜트 4종쇄석기 4종공기압축기 4종준설선 4종사리채취기					불도저기능사2급 로우더기능사2급 스크레이퍼기능사2급 기중기기능사2급 굴삭기기능사2급 덤프트럭기능사2급 콘크리트믹서기능사2급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2급 로올러기능사2급 지게차기능사2급 아스팔트휘니셔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프랜트기능사2급 쇄석기기능사2급 공기압축기기능사2급 준설선기능사2급 사리채취기기능사2급

14. 이 용 사 및 미 용 사 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정 '61.12.05. 법률 제798호	이용사 및 미용사법 시행규칙 제정 '62.05.29. 보건사회부령 제8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82.04.29. 대통령령 제1080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83.12.20. 대통령령 제11281호
이용사	이용사			이용기능사2급	1급이용사 ('84.01.01현재실무경력 15년이상인자) 2급이용사 ('84.01.01현재실무경력 15년미만인자)
미용사	미용사			미용기능사2급	1급미용사 ('84.01.01현재실무경력 15년이상인자) 2급미용사 ('84.01.01현재실무경력 15년미만인자)

15. 식 품 위 생 법

식 품 위 생 법 제정 '62.01.20. 법률 제1007호	식 품 위 생 법 개정 '76.12.31. 법률 제297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81.07.02. 보건사회부령 제67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82.04.29. 대통령령 제1080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83.12.20. 대통령령 제11281호
조리사	조리사	한식조리사 일식조리사 중식조리사 양식조리사 특수음식조리사		한식조리기능사2급 일식조리기능사2급 중식조리기능사2급 양식조리기능사2급 특수음식조리기능사2급	1급조리사(한식조리) '84.01.01현재 실무경력15년이상인자) 1급조리사(일식조리) '84.01.01현재 실무경력15년이상인자) 1급조리사(중식조리) '84.01.01현재 실무경력15년이상인자) 1급조리사(양식조리) '84.01.01현재 실무경력15년이상인자) 1급조리사(특수음식조리) '84.01.01 현재실무경력15년이상인자) 2급조리사(한식조리) '84.01.01현재 실무경력15년미만인자) 2급조리사(일식조리) '84.01.01현재 실무경력15년미만인자) 2급조리사(중식조리) '84.01.01현재 실무경력15년미만인자) 2급조리사(양식조리) '84.01.01현재 실무경력15년미만인자) 2급조리사(특수음식조리) '84.01.01 현재실무경력15년미만인자)
영양사	영양사			<삭 제>	

16.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62.01.10. 법률 제962호	도로운송차량법 개정 '66.01.16. 법률 제188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차량검사주임 차량검사원	차량검사주임 차량검사원 1급자동차정비사 2급자동차정비사 3급자동차정비사				자동차검사기사2급 자동차검사기능사1급 자동차정비기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1급 자동차정비기능사2급

17. 전기통신법 (I)

유선통신자격인정규정 제정 '62.10.07. 체신부령 제210호	유선통신자격인정규정 개정 '69.06.20. 체신부령 제460호	유선통신자격인정규정 개정 '72.11.04. 체신부령 제48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인쇄급유선통신사 음향급유선통신사 전화급유선통신사 인자급유선통신사	인쇄급유선통신사 음향급유선통신사 전화급유선통신사 <삭 제>	인쇄급유선통신사 음향급유선통신사 <삭 제>			인쇄통신기능사2급 음향통신기능사2급

18. 전기통신법 (II)

유선전기통신기술자격인정규정 제정 '62.10.29. 각령 제1020호	유선전기통신기술자격인정규정 개정 '69.11.10. 대통령령 제4241호	유선전기통신기술자격인정규정 개정 '73.03.28. 대통령령 제660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유선기술사(전신급) 유선기술사(전화급)	전신급유선기술사 전화급유선기술사	1급유선기술사 2급유선기술사 3급유선기술사 2급유선기술사			유선설비기사1급(유선설비기사2급) 유선설비기사2급(유선설비기능사2급) 유선설비기능사2급(유선설비기능사보) 유선설비기사2급(유선설비기능사2급)

19. 용접공의 기술시험규칙

용접공의 기술시험규칙 제정 '65.05.06. 교통부령 제222호	용접공의 기술시험규칙 개정 '69.07.18. 교통부령 제33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용접공기술1급A자격증 용접공기술1급B자격증 용접공기술1급C자격증 용접공기술까스1급자격증 용접공기술2급C자격증 용접공기술2급D자격증 용접공기술까스2급자격증 용접공기술3급A자격증 용접공기술3급B자격증 용접공기술3급C자격증 용접공기술3급D자격증 용접공기술까스3급자격증	1급용접공 1급용접공 1급용접공 1급용접공 2급용접공 2급용접공 2급용접공 3급용접공 3급용접공 3급용접공 3급용접공 3급용접공				용접기능사1급 용접기능사1급 용접기능사1급 용접기능사1급 가스용접기능사2급 가스용접기능사2급 가스용접기능사2급 가스용접기능사보 가스용접기능사보 가스용접기능사보 가스용접기능사보 가스용접기능사보

20. 전신전화규정

구내전화교환원자격인정규정 제정 '62.07.18. 체신부령 제199호	구내전화교환원자격인정규정 개정 '69.10.06. 체신부령 제42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75.12.29. 대통령령 제7902호
구내전화교환원(자동급) 구내전화교환원(공전급) 구내전화교환원(자석급)	구내전화교환수 구내전화교환수 구내전화교환수				전화교환기능사2급 전화교환기능사2급 전화교환기능사2급

21. 전 파 관 리 법

전 파 관 리 법 제정 '61.12.30. 법률 제924호	전 파 관 리 법 개정 '67.03.14. 법률 제191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제1급무선통신사 제2급무선통신사 제3급무선통신사 전화급무선통신사 제1급무선기술사 제2급무선기술사 제3급무선기술사 특수급무선기사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1급무선통신사 제2급무선통신사 제3급무선통신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제1급무선기술사 제2급무선기술사 제3급무선기술사 특수급무선기사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통신기사1급 전파통신기사2급 전파통신기능사2급 무선설비기사1급 무선설비기사2급 무선설비기능사2급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2. 공 업 표 준 화 법

공 업 표 준 화 법 제정 '71.01.22. 법률 제230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품질관리기사					품질관리기사1급

23. 계 량 법

계 량 법 제정 '61.05.10. 법률 제615호	계 량 법 개정 '73.01.15. 법률 제2440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계량기기기술감독자	1급계량사 2급계량사 3급계량사				계량기사1급 계량기사2급 계량기능사2급

24.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정 '63.12.31. 법률 제149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82.04.29. 대통령령 제10802호
독극물판매취급자					독극물취급기능사2급

25. 종 묘 관 리 법

종 묘 관 리 법 제정 '73.02.26. 법률 제55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83.12.20. 대통령령 제11281호
양송이종묘사(양송이종균기술자)					버섯종묘기능사2급

26. 영사기사면허령

공 연 법 제정 '61.12.30. 법률 제902호	영사기사면허령 개정 '70.08.28. 대통령령 제531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영사기사	영사기사				영사기능사1급 ('77.05.28이전 면허 취득자로서 이 영 시행일현 재 실무경력 7년이상인자) 영사기능사2급 ('77.05.29이후 면허 취득자로 또는 '77.05.28이 전 면허취득자로서 이 영 시행일현재 실무경력 7년미 만인자)

27. 상공회의소법

주 산 검 정 시 행 규 칙 제정 '62. 07. 28.	주 산 검 정 시 행 규 칙 개정 '64. 02. 27.	주 산 검 정 시 행 규 칙 개정 '70. 03. 10.	주 산 검 정 시 행 규 칙 개정 '72. 03. 29.	주 산 검 정 시 행 규 칙 개정 '78. 03.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82.04.29. 대통령령 제10802호
주산 1급 ~ 7급	주산 1단 주산 1급 ~ 7급	주산 1단 ~ 10단 주산 1급 ~ 7급	주산 1단 ~ 11단 주산 1급 ~ 7급	주산 1단 ~ 11단 주산 1급 ~ 5급	주산 1단 ~ 11단 주산 1급 ~ 5급

타 자 기 능 검 정 시 행 규 칙 제정 '65. 10. 10.	타 자 기 능 검 정 시 행 규 칙 개정 '78. 03.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82.04.29. 대통령령 제10802호
타자 1급 ~ 7급	타자 1급 ~ 5급				타자 1급 ~ 4급

부 기 검 정 시 행 규 칙 제정 '62. 11. 0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82.04.29. 대통령령 제10802호
부기 1급 ~ 4급					부기 1급 ~ 4급

28. 실업교육과정 각종 실무능력 검정규정

실업교육과정각종실무능력검정규정 제정 '70.03.10. 문교부령 제258호	실업교육과정각종실무능력검정규정 개정 '73.08.31. 문교부령 제324호	실업교육과정각종실무능력검정규정 개정 '80.09.15. 문교부령 제47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82.04.29. 대통령령 제10802호
주산특급 주산 1급 ~ 7급 부기 1급 ~ 4급 속기 1급 ~ 7급	주산1단 ~ 주산8단 주산 1단 ~ 8단 주산 1급 ~ 7급 부기 1급 ~ 4급 속기 1급 ~ 7급	주산1단 ~ 주산8단 주산 1단 ~ 8단 주산 1급 ~ 5급 부기 1급 ~ 4급 속기 1급 ~ 5급			주산1단 ~ 주산11단 주산 1단 ~ 11단 주산 1급 ~ 5급 부기 1급 ~ 4급 속기 1급 ~ 5급

29. 국회속기사 양성소 설치규정

국회속기사양성소설치규정 제정 '68.02.03. 국회규정 제25호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자격 제정 '69.05.01. 심사및기능검정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82.04.29. 대통령령 제10802호
	국어속기 1급 ~ 8급 영어속기 1급 ~ 8급				속기 1급 ~ 5급 속기 1급 ~ 5급